



세무사! 국민과 함께 합니다.
60년을 한결같이 100년을 변함없이



제27회 한국세무포럼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 논리 검토



일 시 | 2022. 12. 15.(목) 14:00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B103)

주 최 | 한국세무사회 / 국회의원 용혜인 / 국회의원 이성만

개회사 원 경 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축 사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성 만

좌 장 김 갑 순 교수 (동국대)

발 표 김 신 언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토 론 김 무 열 박사 (부산광역시의회)
황 현 순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김 태 환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공지
사항**

- 포럼 영상 촬영 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 탑재 예정
- 발표자료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연구·상담→한국조세연구소→한국세무포럼」 게재



한국세무사회

진행 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등록 및 안내
14:00-14:15	(개 회 사)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축 사)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축 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만
14:20-14:50	좌 장 김갑순 교수 (동국대) 주 제 황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 논리 검토 ▣ 발 표 김신언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14:50-15:35	지 정 토 론 김무열 박사 (부산광역시의회) 황헌순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김태환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15:35-15:55	자 유 토 론
16:00	(폐 회)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 주 제 :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 논리 검토

I. 횡재세의 개념	16
II. 주요국의 횡재세 논의	18
III. 입법목적의 타당성	21
IV. 횡재세 도입을 위한 조세법상 고려사항	22
V. 결론	27
토론문 김무열 박사 (부산광역시의회)	28
토론문 황헌순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32
토론문 김태환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39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입니다.

제27회 한국세무포럼 개최를 선언합니다.

먼저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 및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공동으로 횡재세 도입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관련 학계 교수님들과 우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2020년 10월 제1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 이래 오늘 벌써 스물 일곱 번 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세무포럼은 조세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학술대회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전문분야의 이론과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성공적인 학술세미나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 납세부담이 발생하는 세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제27회 한국세무포럼의 주제인 “횡재세 도입논의와 과세논리 검토”도 조세 및 경제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실무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제가 도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초과이윤세라고도 불리는 횡재세는 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횡재에 가까운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의 이익에 종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8월과 9월에 이성만 의원님과 용혜인 의원님이 정유업계와 금융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황재세를 도입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두 법률안의 과세요건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정책설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세무포럼의 좌장을 맡으신 동국대학교 김갑순 교수님, 발제를 맡으신 한국세무사회 김신언 연구이사님, 토론을 준비해 주신 부산광역시의회 김무열 박사님, 한국법제연구원 황현순 박사님,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럼 현장에는 오지 못하셨지만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든 세무사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 논리 검토> 토론회를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에서 열리는 두 번째 토론회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저와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첫 번째 토론회는 횡재세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전체적인 무게는 횡재세의 법 규범적 정당성과 입법기술적 고려사항들을 논하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 어림잡아 6개월 정도 된 현재, 오늘 토론회는 그간 횡재세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다소간 공백 상태로 있던 공론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의 내용을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에 공헌해온 한국세무사회가 주도한 것도 든든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올 전문가 선생님들의 지혜는 한국의 횡재세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또 이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유용한 정보로 계속 활용될 것입니다.

특히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횡재세의 법리적 정당성,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2개의 법인세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주로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한국 조세제도 전체 틀 안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 추진 맥락 안에서 횡재세가 갖는 의의와 조세정치적 위상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횡재세는 현재와 같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담 여력이 있는 부문과 계층에 대한 대대적 감세가 맞는지 아니면 오히려 증세가 맞는지, 이 선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이슈입니다. 유럽 각국이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횡재세를 위기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입법기술적 문제나 예상가능한 조세저항을 이유로 횡재세를 쉽게 물리칠 수 없다는 점을 환기시킵니다.

오늘 나온 여러 논의들과 지적 사항들은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 전체에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지식 창고로 활용하겠습니다.

토론회 주최하신 한국세무사회, 이성만 의원, 발제 맡으신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님, 좌장을 맡으신 김갑순 동국대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나와주신 김무열 박사님, 황헌순 박사님, 김태환 박사님께 두루두루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축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국회의원 이성만입니다.

오늘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 논리 검토> 주제로 열리는 제27회 한국세무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횡재세 논의가 촉발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런 뜻깊은 포럼의 자리를 준비해주신 한국세무사회에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유가가 폭등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세수만 줄어들었을 뿐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비판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해보니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유류세를 비롯해 관세, 부가가치세 등 물가 관리를 위해 10조 이상 감세가 추진되었지만, 환율과 금리 등 여러 변수로 인해 민생 체감 효과는 의문으로만 남아있습니다.

IMF에서 발표한 ‘에너지 식량 고물가 정책’ 관련 보고서에서도, 공급자 부담을 줄여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이런 정책은 효과가 떨어지고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유류세 인하분조차 대형정유사들이 최종가격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하지 못한 사이 이들 기업은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뿐만이 아닙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철강 가격 인상으로 철강사는 호황을 누리고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를 맞추느라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고금리로 가게와 기업이 신음하는 동안 금융사들은 실적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떤 역량과 혁신으로 이런 이익을 본 게 아닙니다. 전 국민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횡재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면모를 살펴보면 애초에 국유기업으로 출발했거나, 정책적 지원으로 독점적·과점적 지위를 얻은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기업에 위기가 닥치면 아낌없이 세금이 쓰이고 지원이 이뤄집니다. 반면 국민을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볼 때 그 부담과 피해는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대정부질문을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횡재세 도입에 관해 질의했지만, 답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이후로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자본주의가 더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이미 횡재세와 초과 이익 환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횡재세’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입니다.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에 항구적으로 대응할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횡재세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을 비롯해 좌장을 맡아주신 김갑순 교수님과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김신언 세무사님, 김무열 박사님, 황헌순 박사님, 김태환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27회 세무포럼을 주최해주시고 횡재세 도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용혜인 의원님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 주제 발표자 | 김 신 언 세무사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 논리 검토

| 김신언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

제27회 한국세무포럼
(2022.12.15)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논리 검토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김신언
(세무사, 법학박사, 美 ILLINOIS주 변호사)

목 차

I. 횡재세의 법적 개념

- 1. 논의 배경
- 2. 횡재(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II. 주요국의 횡재세 논의

- 1. 유럽연합
- 2. 영국
- 3. 미국

III. 입법목적의 타당성

- 1. 초과이익 징수
- 2. 기업의 헌법상 권리 침해 여부

IV. 횡재세 도입을 위한 조세법상 고려사항

- 1. 국내 입법안 분석
- 2. 과세요건
- 3. 세제 감면 및 투자 유인책
- 4. 목적세 VS 보통세

2

I. 횡재세의 개념

1. 논의 배경

가. 물가상승을 이용한 부의 독점 현상

- ① 국제유가 및 식량가격 상승 : 코로나 팬데믹 거리두기 완화(수요 증가)
+ 우크라이나 전쟁(공급 감소)
- ② 에너지 회사 등의 영업이익 급속도로 상승 - 기업의 노력이 아닌 외부효과에 의한 비정상적으로 이익이 증가
- ③ 물가상승(겨울 난방비)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우려, 에너지 가격 안정(수요 감축, 재배분) :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 점진적 탈피 목적으로 연대기여금 징수(유럽) +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 제재(美) 등 결합

나. 국내상황

- ① 물가상승(주요국 보다 상대적 낮음) - 국제유가 상승 + 환율 + 금리상승
- ② 정부 유류세 인하 등 조치

3

I . 횡재세의 개념

2. 횡재[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가. 횡재세 과세대상

① 횡재이익의 정의 : 일반적으로 외부요인에 의해 과도하거나, 기업이 그들의 노력으로 벌었다고 보기 힘들거나,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익(미국 의회조사국, CRS)

② (나원준) windfall profits - 가격이 극단적, 갑작스런 상승 따른 이윤
excess profit - inflation상황 독점기업이 가격인상에 따른 이윤

* 경제학에서 구분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곤란 → 사실상 횡재이익과 초과이익을 동일시

③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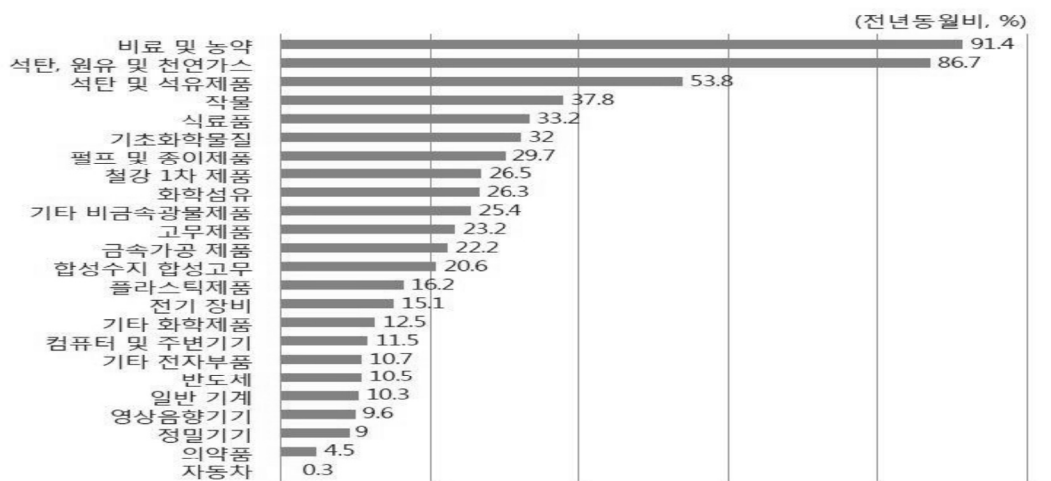
최근 inflation 원인 : 에너지, 식품 외 수입물가 상승, 환율 ; 정유회사의 원가 상승 ↔ 석유회사, 가스회사

4

I . 횡재세의 개념

2. 횡재[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계속]

▲품목별 수입물가 상승



자료: 한국은행 ECOS.
주: 2022년 6월 기준.

5

I. 황재세의 개념

2. 황재[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계속]

나. 반도체 V. 정유

- ① 유사점 - 국내 수출 1,2위를 다투는 품목
국제거래 가격에 영향을 받음
- ② 차이점 - 정유업에 비해 반도체는 수입물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음
- 정유는 원유를 수입 가공하여 내수 & 수출

③ 삼성전자가 반도체 경기 활황 + 판매가격 상승 - 역대 최고 영업이익의 실적을 내었을 때 초과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

But 국외 석유, 가스, 전력회사에 황재세를 부과하므로 국내 정유사에게도 황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

→ 근본원인은 국내 과세를 위한 초과이익에 대한 개념 미정립 때문

6

II. 주요국의 황재세 논의

1. 유럽연합

가. 긴급시장 개입

- ① 2022.9.30. 장관회의 - 에너지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합의
- ② 에너지 가격 안정 방법
 - 피크시간대 수요 감축(전력량 최대 10%, 5% 의무적) - 가격(공급)안정
 - 전력생산자(수익상한제), 석유, 가스 기업 등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2022년 2023년에 기업의 33%의 초과이익 감소 효과)
 - 소비자 인센티브제도 도입(수요 감축 유인)
- ③ 수익의 분배
 -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이전
 - 소비감축 기업 등에게 보상 및 인센티브 지급
 - 청정에너지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7

II. 주요국의 황재세 논의

1. 유럽연합

나. 황재세 - 연대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 부과 목적

- ① 경제적 위기의 국민과 기업 지원
- ②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탈피(2027년 목표)
- ③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 가속(2030년 까지 45%) ; 투자 촉진,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

다. 이탈리아(2023.3.21. 황재세 입법)

- ① 과세대상 기업 : 전기, 메탄가스, 천연가스 생산, 판매, 유통회사
- ② 과세표준 및 세율 : 부가가치의 차액 $(a - b) \times 25\%$
 - ⓐ 2021.10.1 ~ 2022.4.30까지의 부가가치(이탈리아 부가가치세법에 의함)
 - ⓑ 2020.10.1 ~ 2021.4.30까지의 부가가치

8

II. 주요국의 황재세 논의

1. 유럽연합

라. 독일 (도입 논의 중)

- ① 독일인 72~76%가 도입 찬성(2022.6월, 8월 여론조사) - 2018~2021년 평균보다 20% 초과수익에 33% 황재세 부과예정(석유, 석탄, 가스, 정유)
- ② 러시아 가스 공급 의존도 55%(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 ③ 유니퍼 ; 2022년 상반기 123억 유로 손실(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대체 제 수입으로 인한 손실), 정부 150억 유로 구제금융(지분 30% 매입)이후 국유화 추진 중

마. 스페인

- ① 에너지 기업에서 은행(순이익의 4.8% 부과)까지 확대
- ② 물가상승 억제 목적 - \$6.9 billion 황재세 증세(2023, 2024)

9

II. 주요국의 황재세 논의

2. 영국

가. 황재세 연혁

- ① 1981년 은행, 북해 석유회사와 가스회사 과세대상
- ② 1997년 보수당 정부의 초기 국영기업의 민영화한 기업(스코틀랜드 전력, 유나이티드 유틸리티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과

나. 에너지 이익 과세법(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 Act)

- ① 2022.7.5. 도입(2022.5.26. 이후 이익부터 과세)
- ② 도입목적 :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 이익 부담금(한시적임)
- ③ 과세대상 기업 : 영국 또는 영국 대륙붕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
- ④ 세율 : 기존법인세 40% + 25% = 65% (이월결손금, 폐기손실 인정 不)
- ⑤ 슈퍼공제(super-deduction) 도입 : 투자장려

10

II. 주요국의 황재세 논의

3. 미국

가. 황재세 연혁

- ① 1차 세계대전 - 자산소득의 8%(정상이익률) 초과이익의 80% 징수
- ② 2차 세계대전 - 법인세와 소득세에 누진적으로 초과이익 과세
- ③ 오일쇼크 이후 - 국내 석유가격 통제 완화된 1980년 부과, 1988년 폐지

나. 최근 입법 논의(②,③은 이익에 대한 소비세 구조)

- ① The Big Oil Windfall Profit Tax Act(H.R. 7061)
 - 일3만 배럴 이상 석유생산, 수입업자
 - 현재 배럴당 브랜트유 판매가격 - 2015~2019 평균 석유가격
- ② Gas Price Gouging Tax and Rebate Act(H.R. 7099)
 - 일 평균 30만 배럴생산, 총수입 100억달러 초과 석유 생산자
 - 2022년 평균소득 - (2015~2019 평균 과세소득 × 110%)
- ③ 푸틴의 전쟁 수익 중단법(H.R. 7103)
 - 2023년까지 매분기 유가가 2022.2.24.의 유가를 초과할 때
 - 대형석유회사의 과세소득의 50%(가격 전가시 75%) - 임원상여 등 익금산입 조정

11

Ⅲ. 입법목적의 타당성

1. 초과이익 징수

가. 과세방법

- ① 정상이윤을 초과한 것을 한시적으로 과세
- ② 정상이윤의 범위에 대한 법리적, 경제적 연구 없음
- ③ 과세대상의 범위가 전쟁이나 팬데믹 등 시기에 따라 달라져 옴

나. 초과이익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립 필요성

- ①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한 즉각 조치 가능
- ② 사전에 조율된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로 인해 조세저항이 적을 수 있음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 이성만 의원의 案 :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을 둠(영구세 化)
- ③ 정부에서 초과이익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

12

Ⅲ. 입법목적의 타당성

2. 기업의 헌법상 권리 침해 여부

나. 헌법재판소 결정

- ① 특정사업자 불리하게 과세 합헌(헌법재판소 2017.8.31. 선고 2015헌바 339 결정) 다만, 다르게 취급하여 적용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과도하지 않을 것 ;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 계산방법
- ② 종과세 합헌(헌법재판소 2014.7.24. 선고 2012헌바408 결정) ; 과밀억제 권역 취득세 종과세 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다. 다른 나라

- ① 유럽연합 ; 화석연료회사에 대한 초과이득세가 Regulation 2017/1938 에 따라 보호되는 기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EU 집행위원회).
- ② 미국, 영국 - 과거에 전쟁으로 혜택을 본 기업, 오일쇼크 당시 미국내 석유 회사/ 은행, 민영화 이득 회사, 석유시추회사에 대한 횡재세 과세

라. 횡재세 - 자본잠식이 없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과세를 통해 위험적 요소를 없애야 함 → 어떤 기업(납세의무자)의 수익을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과세 표준과 적절한 세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관건이 됨

13

Ⅳ. 횡재세 도입을 위한 조세법상 고려사항

1. 국내 입법안 분석

	이성만 의원의 법안	용혜인 의원의 법안
과세대상	초과소득	초과이익
납세의무자	석유정제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정유사(SK이노베이션, S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은행 16곳
과세표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 5억원	소득금액 × 90%* - 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
세율	20%	50%
세액공제	없음	(초과이익 ÷ 일반 과세표준) × 일반 산출세액
조특법상 비과세·감면	없음	없음
일몰 조항	없음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3년에는 85%, 2024년에는 80%를 적용하는 것으로 함.

14

Ⅳ. 횡재세 도입을 위한 조세법상 고려사항

1. 국내 입법안 비교[계속]

가. 이성만 의원 발의안

- ①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정부가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음에도 오히려 독점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을 극복
- ② 초과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 횡재세로 정의 않고 일정액이상의 초과소득에 대하여 과세(영구세 형태)
- ③ 초과소득 과세대상 요건 - 탄력세율 적용 + 5억원이 넘을 것

나. 용혜인 의원 발의안

- ① 경제 환경의 급변 국민경제 위기 속 경영 혁신, 혁신 투자 등 기업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상 이익을 과도하게 넘는 초과이익에 대한 한시적 과세
- ② 정유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까지 납세의무자에 포함
- ③ 초과이익에 대한 50%과세 후 정상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을 공제

15

Ⅳ. 횡재세 도입을 위한 조세법상 고려사항

2. 과세요건

가. 납세의무자

- ① 용혜인 의원 案 - 정유회사, 은행
이상만 의원 案 - 석유정제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업자
- ②(나원준) 정유업계가 시장의 독과점 지배력을 이용 인플레이션기간 가격인상 -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
- ③(산업연구원)
 - 정유업계의 높은 마진을 원인이 독과점적 시장구조라고 볼 증거가 부족 (제품가격이 국제가격으로 결정되는 경우)
- ④ 해외 석유회사 VS. 국내 정유사 동일 잣대 적용이 합리적인지 고민 필요
 - 영국, 미국은 석유 수입하지만 산유국 VS. 한국은?
 - 국내 정유사가 독점인 이유는 기간산업으로 정부에서 허가를 4개만 준 것임
 - 부과대상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석유회사(직접 시추하여 판매-업스트림 방식) ; : 원유 거래가격 \$20→\$100, 시추비용 변동 無 VS. 비싼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후 다시 판매(다운스트림 방식 ; 내수+수출)

16

Ⅳ. 횡재세 도입을 위한 조세법상 고려사항

2. 과세요건

가. 납세의무자(계속)

- ⑤ 해외 석유회사 VS. 국내 정유사 동일한 잣대 적용이 합리적인지 고민 필요
 - 외부시장 요인 때문이지 기업의 노력으로 벌었다고 보기 힘들거나 부당하다고 생각 되는 이익에 대한 과세가 초과이익이라면 국내정유사는 제외되어야 함; 수십년간 공정 및 품질 개선 등 노력에 대한 성과로서 수출시장에서 유리한 고지 점유(수출이 내수보다 마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 국내 정유업계 오일쇼크 기간 부족한 자본·기술력 어려움 극복 판매량 및 매출액 기준 수출 약 55% 이상 차지(2022년 상반기 반도체 이어 수출 2위 품목) ; 2022년 상반기 원유도입액 460억달러 중 61%를 수출로 회수
- ⑥ 은행 - 조세의 기능(재정 확보, 경기조절, 자원 및 소득 재분배) 중 금리상승 억제(예대 마진 폭 유지)를 통한 물가상승 및 서민의 이자부담 완화 기능 가능 : 영구세로 할 필요가 있음
- ⑦ 업종이 아닌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행위를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연구(영구세)가 필요 - 코로나 펜데믹이라는 외부효과에 의해 이익을 얻은 회사는 제약, 자동차, 프로그램, 배달 등 여러 업종에 걸쳐 있음 → 납세의무자 보다 과세 대상이 되는 횡재수익 측, 초과이익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보다 중요

17

IV. 횡재세 도입을 위한 조세법상 고려사항

2. 과세요건

나. 과세대상(객체) - 정상이윤, 초과이익에 대한 개념 정립

① 정상이윤의 범위 설정

- 리스크 고려 투자금 대비 적정 수익률 구조 산정할 수 있어야
- 석유회사 v. 정유회사(수익 구조가 완전히 다름) : 3년간 당기순이익 평균액에서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초과이익으로 본 이유(이성만 의원 案)에 대한 설명 없음/ (용혜인 의원 案) 정상이윤의 범위를 2022년 10%, 23년 15%, 24년 20%로 본 이유에 대한 기준 없음

② 입법취지 : 한국형 횡재세는 유류세 인하 40% 정도만 가격반영 → 원자재 업계의 가격 결정에 독점적 지위 때문(용혜인 의원 案 = 이성만 의원 案)

- 수출은 국내 유류세와 상관없으므로 제외시켜야 함(=스페인)
- 소비자 가격이 유류세 인하에도 내려가지 않는 것은 정유업계가 독점적 지위보다 유통과정의 가격체계 영향이 큼

: 유류세 2022년 5월 30%, 7월 37% 인하했음에도 주유소 판매가는 오히려 올라 + 지역별 주유소 기름가격 편차

(<http://www.th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3>)

18

IV. 횡재세 도입을 위한 조세법상 고려사항

2. 과세요건

※ 주 단위 일반 휘발유 가격 통계(양금희 의원실 자료)

구분 (2022년)	[세전]정유사공급가 (A)	유류세 (B)	[세후]정유사공급가 (A+B)	주유소판매가 (C)	주유소이윤 (C-(A+B))	유류세 인하분
2월1주	842.18	740.81	1582.99	1667.62	84.63	
2월2주	890.49	745.64	1636.13	1691.81	55.68	
2월3주	912.12	747.8	1659.92	1718.4	58.48	
2월4주	910.51	747.64	1658.15	1739.79	81.64	
3월1주	945.78	751.17	1696.95	1763.96	67.01	
3월2주	1074.14	764	1838.14	1861.64	23.5	
3월3주	1112.14	767.8	1879.94	1994.39	114.45	
3월4주	1087.03	765.29	1852.32	2001.93	149.61	
3월5주	1043.42	760.93	1804.35	2000.06	195.71	
4월1주	1062.67	762.86	1825.53	1990.06	164.53	
4월2주	1046.92	761.28	1808.2	1990.47	182.27	
4월3주	1046.5	761.24	1807.74	1977.17	169.43	
4월4주	1070.16	763.61	1833.77	1967.82	134.05	
5월1주	1083.35	682.72	1766.07	1940.731	174.661	30%
5월2주	1142.51	688.64	1831.15	1942.6	111.45	
5월3주	1199.61	694.35	1893.96	1963.7	69.74	
5월4주	1218.38	696.23	1914.61	1993.75	79.14	
6월1주	1226.25	697.01	1923.26	2013.01	89.75	
6월2주	1270.4	647.43	1917.83	2037.52	119.69	
6월3주	1309.87	705.37	2015.24	2080.94	65.7	
6월4주	1323.06	706.69	2029.75	2115.78	86.03	
6월5주	1293.27	687.09	1980.36	2137.65	157.29	
7월1주	1245.81	640.81	1886.62	2116.78	230.16	37%
7월2주	1146.76	630.91	1777.67	2080.69	303.02	
7월3주	1067.72	623	1690.72	2013.14	322.42	
7월4주	1049.49	621.18	1670.67	1937.71	267.04	
8월1주	1032.03	619.43	1651.46	1881.86	230.4	
8월2주	1003.42	616.57	1619.99	1833.21	213.22	
8월3주	985.79	614.81	1600.6	1780.15	179.55	
8월4주	990.55	615.29	1605.84	1743.76	137.92	

19

Ⅳ. 횡재세 도입을 위한 조세법상 고려사항

2. 과세요건

나. 과세대상(객체) - 정상이윤, 초과이익에 대한 개념 정립

③ 이성만 의원 案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1회 이상 받아야만 적용

→ 종전세율로 회복시 초과이익이 5억원이 넘더라도 과세 불가: 과세권 축소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업자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휘발유, 경유) 범위 제외

④ 초과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법적 연구 필요 - 영구세(이성만 의원 案)

※ IMF - 석유(정유×)기업에 대한 횡재세는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 과세 필요

:임시적 조치는 경제에 잘못된 신호 외부효과(투자감소, 인플레이션) 발생, 에너지분야 초과이익은 한정된 천연자원 매장량의 공급에 기인한 것이므로

20

Ⅳ. 횡재세 도입을 위한 조세법상 고려사항

2. 과세요건

다. 과세표준

① 초과이익이 당기순이익(국내 발의안)이 아닌 마진을 차이로 해야 정확

→ 당기순이익 증가 원인이 거래처 다변화로 인한 매출증가에 의한 것인지, 예대 마진 등의 사유로 인한 횡재인지 확인할 수 있음

② 과세표준 산정시 현행 법인세 세무조정의 형태를 유지

- 성과급(특히, 은행) 손금 불산입 /수출 등 영업이익/ 환율(영업외이익) 영향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에 미친 부분에 대하여 횡재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 등 사실상의 횡재이익을 골라낼 수 있음(美 사례- 푸틴의 전쟁 수익 중단법안(H.R . 7103))

21

IV. 횡재세 도입을 위한 조세법상 고려사항

2. 과세요건

라. 세율

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 침해의 최소성 준수

② 징벌적 과세가 아니어야 함

- 개인이 횡재이익(복권 당첨-3억 초과 33%)에 비해 과도한 세율이 아닌지

- 법인이 합법적인 영리추구 과정에서 어쩌다 횡재한 것이라면 과거 손실분과 비교해 어느 정도 세율을 인정할 것인지 검토

※ 횡재이익 판단 및 과세표준 산정할 때 2020년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하여 법인세 이월공제 감세혜택이 있으므로 문제없다는 시각(나원준)
→ 일반적인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에서 사용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는 비정상적이고 과도하여 과세한다는 횡재세 계산에서 고려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횡재세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산정방식이 필요
ex) 과세표준 산정 (과거 소득 중 일부분 제외할 수 없음) : 이성만 의원의 案 > 옹혜인 의원의 案

22

IV. 횡재세 도입을 위한 조세법상 고려사항

3. 세제 감면 및 투자 유인책

가. 해외 사례

① 영국 - 슈퍼공제(super deduction) ; 투자이익 80%까지 감면

② 유럽연합 - 에너지 소비 줄이는 기업에 보상, 대체에너지 사업 투자(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독립 목적) -Tomas Le TErrien Fragoso, Mathilde Lallemand.

③ 국내 발의안 - 세제감면 고려하지 않고 있음

나. 국내 공유기금 적립 v. 투자 유도

① 은행에 대한 횡재세가 영구세로 정착될 경우 : 예대마진의 한계 설정 효과, 기금 운영에 경비 필요없음. 물가안정에 긍정적 요소 작용

② 횡재이익은 기업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 중의 하나. 비정상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등으로 제재 - 조세의 역할이 아님.

③ 징벌적 과세의 성격이 아니라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투자 또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 필요

23

Ⅳ. 횡재세 도입을 위한 조세법상 고려사항

4. 목적세 VS 보통세

가. 목적세

- ① 목적세란 특정사업 재원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보통세와 차이가 있음
- ② 특정 정책 목적 수행에 적합 BUT 남용되면 재정의 통일적 운영 저해, 경직화
- ③ 용혜인 의원 案 - 에너지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 공유기금 설치, 목적세의 용도를 법인세법 개정안에 규정(일반적으로 조특법에 규정)-現법률체계와 부조화

나. 목적세 기능에 대한 소고

- ① 구체적 목적에 맞는 재정 계획과 징수 금액 산정 필요 - 일반적으로 한시적인 조세특례나 특별징수(ex.교통에너지환경세)가 너무 오랫동안 존속되거나, 세율이 그 목적에 맞지 않게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있음
- ②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보상과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고 징수액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세 취지에 타당함

24

결론

1. 국내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은 신중해야 함
 - 횡재이익에 대한 정의 불충족, 수출 등 과세대상 범위 조정 필요, 당기순이익 증가만으로 횡재이익(과세표준) 산정 곤란, 에너지 독립 등 국가 기간산업 육성(독일-유니퍼社와 비교)에 대한 인식결여
2. 한시적이 아닌 영구세로서 초과이익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필요(정부)
 - 은행의 예대 마진의 폭을 일정하게 유지 가능 = 유럽연합의 이익상한제(전력회사)
 -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부동산에 대한 증과세와 비슷한 개념)
 -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영구세 형태로 도입
3. 목적세의 형태로 도입된다면, 구체적인 재원활용 용도와 소요예산에 맞는 세율구조 확립 필요
 - 유럽연합의 연대기여금 도입 취지
 - 대체에너지 확대에 투자(자발적 참여, 고용증대) 유인 효과

25

토 론 문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 논리 검토

| 김무열 박사 (부산광역시의회) |

1. 서론

횡재세¹⁾에 대한 발제자의 깊이 있는 연구에 관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향후 발제자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횡재세와 관련된 독일의 논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겠습니다. 독일의 논의는 독일 연방재무부의 연구 자문위원회(Wissenschaftlicher Beirat be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가 2022년 8월에 발간한 의견서(Gutachten)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2. 초과이익의 개념

소위 횡재세에 대한 과세대상은 초과이익이 될 것인데, 이러한 초과이익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횡재세 도입에 있어서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초과이익은 결국 순이익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1) 독일에서는 이를 'Übergewinnsteuer'라고 칭하며, 직역하면 '초과이익세'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이론(Produktionstheorie)에 따르면, 기업의 수입이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진정한 경제적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용개념이 있어야 하고 수익이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비용에는 감가상각, 투입요소(예, 기업의 자기자본)의 사용에 따른 기회비용, 급여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순이익은 세법상의 이익의 개념과 구분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세법상 이익산정은 세무조정 등을 통해서 수익의 일부가 세제상 소득(Gewinn)으로 귀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은 세제상 소득에 귀속된 요소비용(Faktorentgelten)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수익(Erlöse)이 실질적인 비용을 초과하면 초과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용어상 실질적인 경제 이익, 순이익 등으로 언급된다.

경쟁시장이 기능하는 곳에서 초과이익은 장기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대부분 사라진다. 단기간에 코로나19 팬데믹이나 러-우 전쟁과 같은 쇼크로 인해 유통망 파괴, 수요급증 등 수익과 비용에 대한 관계가 급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은 생존의 위협에 빠져들게 되고, 어떤 기업은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황재세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잉여이익(Überschüsse)으로 표현된다.



Abb. 1: Preisentwicklung Rohöl (Brent) in den Jahren 2006 bis 2022 (in US-Dollar je Barrel).
Quelle: <https://fred.stlouisfed.org/series/WCOILBRETEU>

자료: 독일연방재무부, “Übergewinnsteuer”, 2022. 8. p. 10.

그리고 실무상으로 “초과이익”은 거의 구분할 수가 없다. 초과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군을 설정해야 하는데, 전(前)기간에 발생한 이익과 비교를 하게 된다. 현재 횡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정유회사는 원유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2015-2019년의 원유가격을 비교기간으로 설정하여 이 보다 높은 현재 원유가격을 기초로 정유회사에게 횡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1-2015년의 원유가격은 정확하게 2015-2019년보다 더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초과이익을 입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잉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일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비록 이익의 경제적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대차대조표상 자본수익률은 업종별로 매우 큰 차이가 난다. 2021년 연방은행에 따르면 2018 거래는 대차대조표 총액의 5.8%에 해당하는 연간 흑자(이자 비용 포함)를 가지지만 건축업은 3.8%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업종별로 구분하여 초과이익을 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업종별 리스크가 다르다는 점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매출액에 초점을 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정확하고 법적안정성이 보장되는 차별인지 그리고 유럽법상 보조금 통제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 지가 의문이다.

다음으로 세제상 규제가 소급적인 것이 아니라 장래의 이익에 적용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개념은 기업에게 (조세)회피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자본수익률의 일부 또는 전체가 감소된다면 재무구조, 생산구조, 자회사 등을 수정하여 자본수익률이 거의 초과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다.

이익인식의 현실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이익이 실제로 초과이익을 나타내는지 여부와 과세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3. 법인세와 관련하여

초과이익세에 대한 논의에서 “초과이익”은 일반적인 이익과세에 해당한다. 영업세율에 따라 다른 모든 과세소득과 마찬가지로 “초과이익”은 독일에서 평균 약 30%의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국가는 이미 초과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초과이익이 높은 세율로 과세되거나 추가적인 세목으로 과세된다면, 소득과 손금에 대한

기존의 불균형적인 과세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완전히 과세되는 반면에 손금은 제한된 손금환급과 손금이월로 인해 100% 세금환급은 불가능하다. 기업과세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은 위험한 투자에 대한 투자유치와 혁신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 소득이 추가적인 초과이익세로 과세되거나 기업이 초과이익세가 도입될 것이라고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에 투자는 확실히 감소하게 된다.

추가적인 초과이익세에 대한 대안으로 법인세를 확대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과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산상 자기자본이자를 과세 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자기자본과 외부자본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그에 따라 순수한 세제상 유발되는 과잉사용되는 외부자본을 제거할 수 있다. 둘째, 100% 자기자본비용을 공제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세금은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과세가 될 수 있으며, 투자결정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계산상 자기자본이자는 실제 자본비용과 구분되고 투자효과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비록 자기자본비용을 차감함으로써 법인세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에 맞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초과이익세의 목적과는 다르다. 목적은 금융 및 투자 중립성이지 위기이익에 대한 표적과세가 아니다.

따라서 특정 업종과 특정 상황에서 초과이익세를 도입하는 것은 회의적이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과세소득의 정의를 경제적 이익의 정의에 따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세수는 훨씬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초과이익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기업은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주주들에게 배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이거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독점규제법을 통해서 부당한 가격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 최후에 세제를 개편하여 초과이익세를 부과한다면 불필요한 가격인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창출된 세수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그에 고통을 받는 소비자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 론 문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 논리 검토

| 황헌순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

I. 시작하며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27회 한국세무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신언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횡재세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업에서의 회계에 대한 논의와 세법의 기본이론에 대해 많이 배우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송구스럽게도 토론자가 회계학적 소양이 부족하며, 세법의 기초이론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금일은 세법의 기초이론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는 점에 대해 너그러이 양해부탁드립니다.

세법 역시 법의 한 종류이며, 법의 해석방법으로서 기본이 되는 것은 문리해석입니다. 횡재세에 있어서의 ‘횡재’는 사전적 의미로서 ‘뜻밖에 얻은 이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횡재세 과세와 관련하여 발제자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사전적 의미에 포섭해 본다면, 국제유가 등의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회사 등의 영업이익이 그 기업의 노력이 아닌 위와 같은 외부효과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점에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횡재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수익은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바꾸어 말하면 뜻밖에 얻은 이익이므로 횡재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게 된 연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 기저에는 응능과세 원칙 즉,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라는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과세의 결과 헌법상 조세공평이 달성된다는 논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세법상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우선하는 것인가 하는 점, 횡재세와 같이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혹은 중과세가 조세공평에 합당한가 하는 점이 중요한 논의대상일 것입니다.

횡재세에 대한 입법안 등의 논의를 보면, ‘형식적’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사고방식은 반영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에 합치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세와 세법의 관계 및 세법의 성격, 세법상 과세의 정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Ⅱ. 횡재이익에 대한 과세개념에 대한 논의

발제자께서는 4면에서 횡재이익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일반적으로 외부요인에 의해 과도하거나, 기업이 그들의 노력으로 벌었다고 보기 힘들거나,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1. 소득발생의 우연성

첫째, ‘기업이 그들의 노력으로 벌었다고 보기 힘든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복권에 당첨된 것과 결과론적으로는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물론 금액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사인인지 법인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 논리적으로는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2. 소득의 부당성

둘째, 전술한 소득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소득의 ‘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 중의 하나는 ‘조세회피’입니다.

조세회피에 있어서 부당성은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조세회피를 시도한 납세자는 조세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수의 납세자들이 취하지 않는 거래 형식을 취한 결과, 동일한 경제적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경감되며, 이를 ‘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다수의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감 혹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는 조세회피를 시도한 납세자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전자의 경우는 조세회피를 시도한 ‘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조세회피의 경우에 대해 ‘부당성’을 논하는 경우는 ‘결과의 부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조세회피를 시도한 납세자의 행위형식이 다수의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거래형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세의 경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소결

전술한 논의를 종합하면, 횡재이익이 뜻밖에 얻은 이익이라면, 예컨대 기타소득과 달리 보아야 할 당위성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 이론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혹은 법인의 경우 소득에 대해 관련 조세를 납부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만약 기업에게 횡재(橫財)가 아니라 횡재(橫災)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권자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횡재이익이 초과이익과 동일시된다는 점은 당초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지가 예상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준점을 정해 놓아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노력(어떠한 행위) 등이 수반되지 않는 결과 ‘부당함’이 발생해야 하는 것인데, 이 부당함은 어떠한 경우와 비교하여서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Ⅲ. 황재세의 과세상황에 대한 논의

1. 황재세의 부과와 탄소중립사회 실현

외국에서의 연대기여금에 대한 논의 혹은 이탈리아의 과세대상 기업을 볼 때, 황재세의 납세의무자는 에너지와 관련한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재세는 이러한 기업들이 최근 국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되어 과세하고자 하는 논의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대상, 목적, 내용을 보면, 이는 최근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마련에 일조하는 것이 더 큰 과세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즉, 당초의 주된 과세목적과 과세이유는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마련이며, 그러한 과세논리 혹은 이유의 하나로서 최근 국제적 상황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2. 황재세의 부과근거로서 오염자부담의 원칙

발제문에서는 영국의 경우에도 투자장려 등을 위해 에너지 이익과세법이 운용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 현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민간자본의 투자 및 그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재원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대상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가 에너지와 관련한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래의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 유럽에서는 창문세가 있었던 바와 같이, 최근 탄소중립사회 실현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는 과거 ‘응능과세원칙’만이 조세부담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오염자부담의 원칙’ 역시 그에 필적할 만한 중요성을 가지는 과세논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IV. 횡재이익에 대한 과세근거 및 범위

1. 초과이익 및 정상이윤의 개념정립 가능성

발제자께서도 12면에서 ‘정상이윤의 범위에 대한 법리적, 경제적 연구가 없었으며, 과세대상 범위가 상황에 따라 달라져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횡재이익 혹은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초과이익의 전제가 되는 ‘정상이윤’을 마련할 수는 있는 것인지, 이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관련논의에 대해 고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논의를 보며 의문이 생기는 점 혹은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현행 세법상 세율이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세법의 세율을 개정하지 않고, 왜 법적 개념을 설정하기 어려운 정상이윤, 초과이익 등을 논의하여야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와 횡재세에 대한 중과세

횡재세에 대한 과세논리가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라고 한다면,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위법소득에 대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는 적법한 과세를 벗어난 부분에 대한 소득창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양자는 어떠한 기준점을 벗어나 소득을 얻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법소득이 적법하게 얻은 소득에 비해 중과세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조세가 징벌이 아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이라는 것은 역시 계속성과 영리성이 그 판단기준이며, 사업성의 판단에 있어 적법성은 그 요건이 아닐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인정하는 적법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소득에 대해서도 적법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며 중과세하지 않는데, 그 정도가 위법에 미치지 못하는 부당하다고 언급되는 소득에 대해 위법소득보다 더욱 과중한 조세부담을 하여야 할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3. 횡재세 부과에 정당성 및 필요성

발제문 13면에는 과밀억제권역 취득세의 종과세 제도 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가 과도하게 증가할수록 사회기반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마련을 위해서 위와 같은 종과세 제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와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횡재세와 같이 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득규모에 대한 논의입니다. 예컨대, A라는 에너지기업이 B라고 하는 에너지 외의 기업과 비교하여 동일하다 할 때, 가령 A기업이 최근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B 기업과 달리 종과세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세율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세율변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평과세에 합당할 것입니다.

둘째, 사적자치와 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만약 횡재세의 과세근거 중에 외국과 같이 민간기업의 투자장려 및 촉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횡재세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금전적 부담을 우선시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는 법적 근거가 없이 단순히 소득이 많으니 과세해야 한다는 ‘괘씸죄’로 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히려 기업들의 사적자치의 영역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과세근거의 마련에 대한 논의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의 석유회사 등에 대해 횡재세를 과세한 이유는 바꾸어 생각하면, 그 기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에 비해, 이에 대한 책임이 낮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횡재세가 적어도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부효과를 반영할 만한 금전적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과세한다는 논리가 타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넷째, 관련법령이 마련된 이후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한 경우에 대한 논의입니다. 횡재세와 같이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를 인정하는 법령이 마련된 이후, 현재와 같은 국제정세가 급격히 변화하여 입법안에서 과세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상황이 과도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과세체계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V. 마치면서

발제자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는 조세를 점차 징벌로 보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세는 형법에서 규정하여야 할 형벌의 종류에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적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라는 것은 형해화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 역시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조세와 세법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 점과 연결됩니다.

즉, 조세가 국가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는 반론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세법은 이러한 조세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 혹은 과세권자가 납세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위해 넘어야 하는 난관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가치판단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세법의 성격이 전자와 같다면 횡재세의 도입은 국가재원 마련의 확충 및 필요성으로 인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의 성격이 후자라면, 자의적 과세 혹은 조세법률주의로부터 파생되는 과세요건명확주의와 과세요건법정주의는 보다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납세자의 재산권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횡재세 혹은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가 그 부과의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 조세와 세법의 관계 및 세법의 성격에 대해 함께 논의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횡재세라는 새로운 논의를 소재로 하여, 세법의 기초이론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신언 박사님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 론 문

횡재세 도입에 대한 3가지 경제학적 고찰

| 김태환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제유가는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3개월 동안 무려 70% 가량 폭락했고, 코로나19 이전 수준(\$60/배럴)을 회복하는데 1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후 유가는 석유수요 회복과 산유국의 더딘 증산이 맞물리며 2022년 1월 단숨에 배럴당 \$80 수준까지 상승했고, 같은 해 2월 세계 3위 원유생산국 러시아의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은 유가를 배럴당 \$130까지 치솟게 했습니다. 이처럼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유가는 저점 대비 고점까지 800% 이상 상승하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누적된 고유가 상황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정책당국자들은 이 같은 국민적 고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논의하는 “횡재세(Windfall tax)”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경제학은 한정된 자원하에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가격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회현상의 일반이론들을 도출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횡재세가 도입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경제학적 질문에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1) 과세 대상인 횡재(초과이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 시장은 혁신한 기업에게 초과이윤을 선물한다.

노력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적절한 규모(때로는 노력보다 크게, 때로는 노력보다 작게)의 보상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도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혁신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당하지만, 시장은 살아남은 기업에게 혁신의 대가인 초과이윤을 선물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소위 “횡재”했다고 여겨지는 기업들은 진단키트 제조업, 마스크 제조업, 반도체업, 해상운송업, 보험·증권·은행업, 온라인게임업, 배달대행업 그리고 최근 논란에 중심이 된 정유업 등등 그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심지어 “초과이윤”을 얻은 기업까지 그 과세 범위를 확장한다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한 거의 모든 기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노력의 대가이고, 어디부터 횡재로 정의해야 하는지요? 업종·업체·규모별 적정 이익은 과연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대개 “운”이 좋았다며 겸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운 좋게 생긴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 과연 얼마큼 과세하는 게 경제적 정의에 부합하는지요? 이는 결코 단기간 내에 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참고로, 최근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초과이윤세는 우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횡재세와 그 부과대상과 방법에 큰 차이가 있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제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정책입안자들이 종종 적정 이익률을 사전적으로 정하여 시장을 규제하는 시도를 하는데, 이는 민간이 혁신을 통해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기회를 막을 수 있어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업은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를 결정합니다. 만약 그 투자 결정이 미래 예측에 부합하면 그 기업은 시장의 초과이윤을 얻을 것이고, 예측이 잘못된다면 자칫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기업의 미래 초과이윤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면,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될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너무나 자명합니다.

(2) 횡재세가 추구하는 목적은 달성 가능한가? - 비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향은 경제학에서 오랫동안 실증적으로 규명한 현상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공급자가 제한된 시장에서는 경쟁적인 시장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그 상승폭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석유제품(휘발유, 경유)은 단기적으로 매우 비탄력적인 재화이며, 심지어 코로나19 확산기 사람들은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더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1776년 Adam Smith의 「국부론」에 나오는 유명한 예시를 인용하자면, 우리의 저녁 식사는 푸줏간 주인과 빵집 주인의 박애주의가 아닌 그들의 이익추구에 때문입니다. 즉, 비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은 경제학에서 오랫동안 실증적으로 규명된 사안으로, 이는 한정된 자원하에서 인간(기업)의 극히 자연스러운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황재세가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나, 이는 과거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석유제품이 비탄력적 재화인 만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급 증가나 수요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며, 공급자의 비용 증가를 통한 세수 확대가 석유시장 내 또 다른 왜곡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3) 국내 정유사가 정말 부도덕한가? -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 석유산업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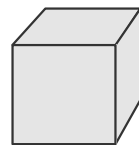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고유가는 우리 선택의 결과로 가격은善도 惡도 아니기에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하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고방식으로 시장가격을 재단하여서는 올바른 정책이 도출되기 어렵습니다.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지금의 고유가는 그에 대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급감소] 2014년 이후 저유가 시기가 6년 넘게 지속되며 전 세계 석유산업이 불황 속에 지내왔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유가가 폭락하며 수많은 중소 세일업체가 완전히 도산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가 탄소중립에 경도되어 화석연료 부문에 투자가 위축되었고, 수많은 기업은 ESG 경영으로 화석에너지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증가] 세계 2위 석유회사 BP CEO는 2020년 6월 한 인터뷰에서 인류의 기후위기 대응으로 석유수요가 곧 정점에 다다를 것이라 말했지만, 우리는 제약조건이 없다면 여전히 크고 편의성 좋은 SUV를 선호합니다(미국의 작년 신차판매량 1~6위 SUV). 또한 매년 전기차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세계 100대의 신차판매 중 90대 이상은 여전히 내연기관차입니다. 자동차의 내구연한과 교체주기, 그리고 전기차의 획기적인 비용 절감 달성 시기, 대체가 어려운 산업용 수요증가

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2030년까지 세계 석유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에너지는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이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하루빨리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당장 석유·가스 없이는 여행도 다닐 수 없고, 원활한 물류도 불가능하며, 세계 식량 생산에 차질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당장 이번 추운 겨울도 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류가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유산업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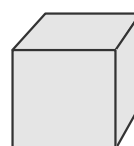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정유4사의 20년간(2001년~2021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3.3%입니다. 그나마도 석유화학, 운할유를 제외한 순수 정유부문(원유를 휘발유 등 석유제품으로 정제)의 영업이익률은 1.7%로 아주 초라합니다. 더욱이 같은 기간 정유4사가 국내에 투자한 금액은 총 30조 원 수준으로, 이 중 정유부문에 투자된 돈은 16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이 계속 투자되어야 하는 정유산업은 다른 경쟁자가 모두 도태되기 전까지 경제적 해자(moat)가 없어 늘 위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세계 원유정제시설 용량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이 상황에서도, 국내 정유사 모두가 세계 5대 정제시설로 성장한 것은 우리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법한 우리 기업의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규모 기준).

뉴턴의 운동법칙은 모든 자연현상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우리가 非시장적 접근을 통해 시장 가격 인하를 강제한다면, 반작용 법칙에 따라 시장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것이고, 또한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법안이라도 결코 작용·반작용 법칙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가 사전에 수반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층 더 성숙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횡재세 도입에 앞서 다양한 관점의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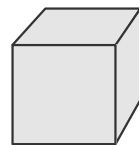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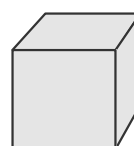
MEMO



MEMO



MEMO



제27회 한국세무포럼 <비매품>

인 쇄 일 2022년 12월 14일

발 행 일 2022년 12월 15일

발 행 인 원 경 희

발 행 처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팀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서초3동 1497-16)
전화 (대표) 521-9544

